

인도네시아중부자바주와자매결연체결안

의안 번호	32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 이유

- 도정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교류협력 파트너의 확보와 동북아·미주 위주의 국제교류를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하고
-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연합체인 아세안이 세계경제의 중요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수출 확대 및 통상 증진을 위한 지방차원의 교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
-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와 우리 도는 지난 2003. 9. 8일,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래, 중부자바주 태권도 선수단 충북도 전지훈련 2004.11.28일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등의 우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, 양 지역간의 교류수준의 최고 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 되었다고 판단되어,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○ 자매결연체결 장소와 시기는

-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대표단을 9월 말에 충청북도로 초청 자매결연체결행사를 9.29일에 개최하고, 다음 날인 9.30일에 있을 200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식과 10. 1일의 “인도네시아의 날” 행사에의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여, 이번 자매결연체결이 더욱 뜻 깊은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○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내용은

- 투자 및 통상, 원예 및 농업기술, 문화 및 교육, 관광 및 스포츠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으며,
- 자매결연 협정서 안은 기 체결한 우호교류의향서 및 우호 교류협정서에 명시된 사항의 재 강조사항임

3. 참고사항

- 가. 양 지역 비교표
- 나. 그 동안 교류현황
- 다. 향후 교류계획
- 라.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의 기대효과
- 마. 위치도
- 바.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개황
- 사. 자매결연협정서(안)

양 지역 비교표

구 분	총 청 북 도	중부자바주
면 적	○ 7,432km ²	○ 32,500km ²
인 구 ('04)	○ 150만명	○ 3,200만명
위 치	○ 대한민국의 중앙 ○ 바다에 접하지 않는 유일한 내륙도	○ 자바섬의 중앙 ○ 고대 힌두, 불교, 이슬람 왕조들의 발상지
기 후	○ 온대몬순기후 - 겨울 : 한랭건조 - 여름 : 고온다습 ※ 평균기온 : 13.4℃	○ 건 기 : 3월 ~ 9월 ○ 우 기 : 10월 ~ 4월 ○ 호우기 : 11월 ~ 1월 - 평균기온 : 27℃ - 최저기온 : 20℃ ※ 고지대 평균기온 : 5℃
산 업	○ 농림어업 : 7.2% ○ 제 조 업 : 38.5% ○ 서비스기타 : 54.3%	○ 1차산업(농·축·임업) ○ 금속 제작, 기계 및 화학 산업 발달
시 차	○ GMT + 0800	○ GMT + 0600 (한국보다 2시간 늦음)
GDP('04)	○ 6,674억불 ○ 1인당 GDP : 14,162불	○ 2,558억불 ○ 1인당 GDP : 1,181불
관광자원	○ 속리산국립공원 ○ 소백산국립공원 ○ 월악산국립공원 ○ 청남대, 직지 등	○ 보로부드르 사원 ○ 디엔 고원지대 ○ 찐디스쿠 ○ 므든 사원 등

그 동안 교류현황

□ 충청북도와 중부자바주간의 교류제안

- '02. 10. 14 : 인도네시아 국방부 감찰단장 수하르또 중장
- '03. 4. 29 : 충청북도 국제자문관 김광현

□ 충청북도 실무대표단 중부자바주 사전방문

- 일 시 : '03. 8. 26 ~ 8. 31
- 방문자 : 국제통상과장의외 1명

□ 중부자바주 대표단 충북도 방문 「우호교류의향서」 체결

- 일 시 : '03. 10. 8
- 방문자 : 중부자바주지사의외 40명

□ 중부자바주 태권도 선수단 우리 도 전지훈련 방문

- 일 시 : '04. 8. 2 ~ 9. 1
- 방문자 : 총 17명(선수 13명, 코치 4명)

□ 충청북도 실무대표단 중부자바주 사전방문

- 일 시 : '04. 10. 30
- 방문자 : 국제통상과장의외 1명

□ 충청북도 대표단 중부자바주 방문 「우호교류협정서」 체결

- 일 시 : '04. 11. 28
- 방문자 : 충청북도지사의외 13명

□ 중부자바주 「200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참가 MOU」 체결

- 일 시 : '04. 11. 28
- 장 소 : 중부자바주 스마랑(주정부 청사)
- 서명자 : 청주시 - 부시장, 중부자바주 - 주공예협회장

향후 교류 계획

□ 우수중소기업판매전 등 국제행사 상호 참여

- 양 지역의 우수제품 판매 및 전시행사 정보 교환
- 주 정부 및 행사관련 기관·업체 상호 참가 지원

□ 양 지역간 경제사절단 상호 파견

- 양 지역의 우수제품 및 관심제품 정보 교환
- 양 지역의 구매사절단 상호 파견

□ 농업분야 상호 협력

- 양 지역간 농업정책 및 기술정보 교환
- 벼 및 화훼류 재배 기술 등 양 지역간 경쟁력분야의 선진기술 교류

□ 환경분야 상호 협력

- 양 지역간 환경정책 및 기술정보 교환
- 폐기물 처리기술 지원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

□ 대학간 교류 및 학술분야 교류 지원

- 독립대학 및 기타 도내대학과의 교류지원

□ 양 지역간 이해도모와 우호증진 시책 운영

- 지방정부간 행정시책 교환 및 공무원 교류
- 민간차원의 문화·청소년·스포츠 분야 등 교류

자매결연 체결의 기대효과

1. 동남아시아와 교류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

- 미국 아이다호주, 일본 야마나시현, 중국 헤이룽장성, 멕시코 풀리마주, 아르헨티나 추부트주에 이어, 동남아시아 지역과는 최초로 자매결연 체결
- 양 국가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간 경제, 행정, 문화, 농업, 대학 분야 등 실질적인 교류 추진

2.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세계시민으로 의식 및 수준 제고

-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한 주민 의식의 선진화 및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인식 제고

3. 경제, 농업, 환경보호기술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- 제품의 현지 구매정보 교류를 통한 무역 및 투자 활성화
- 경제정보 교류 및 무역거래 활성화
- 선진농업 및 환경보호기술의 지원을 통한 관련 제품의 수출 증진

4. 학술 및 청소년 교류를 위한 대학간 교류 확대

- 양 지역 대학간 자매결연 체결 등 교류 지원
- 교수 및 학생의 상호 교환 연수 프로그램 운영

위치도



중부자바(Central Java)州 개황

□ 州 名 : 중부자바(Central Java)

○ 6市, 29郡, 564面(8,640개 마을)으로 구성

□ 州 都 : 스마랑(Semarang), 150만명

□ 人 口 : 3,200만명(전체의 15%, 전국 30개 주중 3위)

□ 面 積 : 32,500km²(충북의 약 4배)

□ 位 置 : 자바섬 중앙

□ 州知事 : 마르디얀또(H. Mardiyanto)

□ 公用語 : 인도네시아어

□ 宗 教 : 회 교

□ 經 濟

○ 1인당 GDP : 1,181달러

○ 주요산업 : 농업, 축산업, 임업, 금속제작, 기계 및 화학 등

○ 기업체수 : 597개 업체

- 목재, 등나무, 강철·목재 혼합 가구 생산업체 : 323개

- 직물, 의류, 바틱 악세사리, 장갑,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 : 122개

- 농수산물 가공업체 : 78개

- 기타 잡화 생산업체 : 74개

□ 화폐단위 : 루피화(Rup), 1US\$ = 9,615Rup (2005. 6.17일 기준)

□ 時 差 : 한국보다 2시간 늦음

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간

자 매 결 연 협 정 서

충청북도지사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중부자바주지사가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(이하 “양 도 · 주” 라 한다)는

- 2003년 10월 8일 충청북도에서 서명한 우호교류의향서와
- 2004년 11월 28일 중부자바주에서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라,
-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,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.

제 1 조

양 도 · 주는 국제교류사업이 양측의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 지원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, 동 사업이 양 지역 발전에 있어, 효과적이고, 상호 유익한 협력 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.

제 2 조

1. 양 도 · 주는 다음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무역교류 증진 및 상호 투자실현 지원 등 경제 분야
- 나. 농업 및 원예 분야의 경험 교환 및 기술 교류
- 다. 대학간의 협력, 학생교환 등 교육 분야
- 라. 관광활동 지원 및 청소년 · 스포츠 교류 등 관광 및 스포츠 분야
- 마. 기타 양 도 · 주지사가 합의하는 분야

2. 양 도 · 주는 자국내 법규를 준수하며, 협력증진을 목표로 한다.

제 3 조

1. 충청북도 및 중부자바주 정부의 해당 부서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협력 분야를 실현 시키기 위해 공동사업을 기획한다.
2. 제2조 1항에 관련한 업무조정을 위해 양 지역의 해당 부서는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.
3. 제1항과 관련된 해당 부서는 공동 기획사업의 실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한다.

제 4 조

본 협정서에 규정된 사업실천과 관련하여, 양측은 각각의 국내법규를 준수한다.

제 5 조

본 협정서의 해석 및 이행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은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한다.

제 6 조

본 협정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7 조

본 협정서는 무기한 유효하다. 다만, 협정의 파기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.

제 8 조

본 협정서는 동일한 내용의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, 이를 양측이 보관한다.

2005. 9. 29.

이 원 증
대한민국 충청북도지사

마 르 디 안 또
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지사